05

공공행정
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

추진부서 | 경기도 교육협력과 ☎ 031-8008-4812

개선배경
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보조의 신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 예산편성지침(308-08)에 각급 학교로 보조하도록 되어있어 교육청 ·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없었음
- 또한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9항에 따라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 · 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 · 군 · 자치구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통계목 부재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
☞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 제6조 [별표11]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(308-08) 개선으로 교육청(또는 교육지원청)을 통해 교육기관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, 시 · 군 · 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(308-11)을 신설하여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하게 하였음. 특히, 기존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회계분리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사업집행 및 정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함

개선내용

개선 전	개선 후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 제6조 [별표11] 1. (308-08)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자치구 고등학교 이하 **각급 학교로 보조** 2. 시 · 군 · 구 교육비특별회계 **통계목 부재**로 시 · 군 · 구-교육청 **협력사업추진 불가**	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 제6조 [별표11] 1. (308-08)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자치구가 **직접 또는 교육감 · 교육장을 통하여** 각급 학교로 보조 2. **(308-11 신설)** 시 · 군 · 자치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**통계목 신설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**

추진과정

’22.5.4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개정건의 요청(1차)
– 시 · 군 · 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

’22.5.11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개정건의 요청(2차)
– 시 · 군 · 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

’23.2.16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개정건의 요청(3차)
– 시 · 군 · 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

’23.2.28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송부
– 시 · 군 · 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

’23.7.31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개정
– 시 · 군 · 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

개선효과

- 시 · 군 · 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로 시 · 군 · 구–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가능해졌음
- 또한,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조가 가능해짐으로써,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가 원활해 졌으며, 예산보조를 받는 학교는 하나의 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
- 무엇보다 전국 508,850명의 학교 교직원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자치단체 재원과 교육청 재원의 회계분리로 인한 업무 혼란 및 행정 낭비를 격지 않게 되었음